

2019년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2. 8.(금요일)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64건(안전번호 제2019-343호~806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한 쇼핑몰 게시물 1개 안전 및 제품 홍보사진을 이용한 쇼핑몰 게시물 1개 안전은 부결하고, 자기계발서 텍스트파일 게시물 1개 안전은 심의일 현재 삭제가 되어있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일본 만화 무단 번역 게시물 1개 안전은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최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343호~806호로 모두 464건임
우선 안전번호 제2019-343호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제품 판매를 위한 설명에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사안이고, 다음으로 안전번호 제2019-344호는 제품 홍보사진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제2019-34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검토보고서에 각주로 설명한 지난 제3분과위원회(2018. 7. 18. 개최)에서 심의한 캐릭터는 원 캐릭터와 동일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금번 심의 안전 캐릭터는 동일한 캐릭터로 보임
 - A 위원 : 판매자는 캐릭터를 본인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

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매자를 상대로 민·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을 사적인 권리로 규정하면서 그 위반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문제가 되는 게시물 내 캐릭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캐릭터 사용은 간접적 영리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제2019-344호 안전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문제가 되는 광고사진들은 실용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촬영된 것으로 저작물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관리자가 직접 제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민·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C 위원 : 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 제품에 대한 구매 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음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 민원인이 관리자임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 수입판매

계약서에 대하여 독점 판매권자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제출한 수입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에 따르면 민원인이 해당 제품사진에 대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없었고, 판매계약 기간이 2017. 11. 17.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내 국내 독점 판매권자도 아닌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심의 안건은 검토보고서 각주로 설명한 촬영된 사진에 대한 판례와 같은 사례로서, 당사자 간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심의위원회에서 제품판매 게시물 내 사진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345호~346호는 이메일 주소를 비밀댓글로 남기면 음원파일의 불법복제물을 보내준다는 게시물이며, 다수의 댓글이 남겨져 있음
(해당 음원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이메일 주소를 남겨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특별한 이견 없이 시정권고를 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347호는 자기계발서 텍스트파일을 직접 게시 형태로 제공한 게시물에 대한 것임
검토보고서 작성 당시 게시물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함

- (심의대상 게시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화면을 보여주면서)심의위원회 심의일 현재 해당 블로그의 게시판이 전부 삭제되어 있음을 보고함
- B 위원 :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경고의 대상이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채증화면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채증자료가 있어, 역사적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으므로 게시자에 대하여 시정경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특별한 이견 없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348호는 최신 일본 만화 무단 번역 게시물로, 게시자는 한 화 전체 분량을 직접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다수의 만화 게시물을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해당 블로그에서 다른 불법복제물 게시여부, 게시자가 직접 번역하였는지 여부, 방문자 수를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을 보여주며)해당 블로그는 방문자 수는 비공개이며, 해당 저작물 외에도 다수의 저작물이 제공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의 “오타/오역 있으시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의역 있습니다”, “글씨 틀린 것은 수정 완료” 등 표현에 비춰보면 게시자 본인이 직접 번역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 게시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하면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을 수 있음
실제로 공부목적으로 논문을 번역하여 해설을 블로그에 올려 댓글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깃허브 (GitHub) 방식으로 자신의 소스를 공유하고 댓글로 피드백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함
또한 만화그림과 글이 동시에 게시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B 위원 : 강상욱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 화 전체분량의 만화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지 의문임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블로그는 온라인상 공부 및 소통 등의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복제물 공유나 상업적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향후 검토보고서 각주에 설명되어 있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면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349호~350호는 일반인 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것으로 만화를 단순 불법복제한 게시물이라고 보고 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343호는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시물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시정권고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344호는 온라인 쇼핑몰 내 제품 홍보사진 게시물로 문제가 되는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별개로 민원인이 문제가 되는 사진의 권리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해당 사진이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로 사진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345호~346호는 이메일 주소를 비밀댓글로 남기면 불법복제물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복제물이 실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347호는 자기계발서 텍스트파일 게시물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게시물이 현재 삭제되어 있어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권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348호는 최신 일본 만화의 무단 번역 게시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전체위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343호, 344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심의일 현재 삭제된 제2019-347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기로 의결하고, 제2019-348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2019-349호~806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2. 28.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